



제424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탁병원 감면대상 연령 하향 및 보훈병원 진료비용 감면을 상향〉

■ 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10, 2207411,
2207413, 2207414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개요	1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II . 검토의견	5
1. 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현황	10
2. 위탁병원 감면대상 연령 하향(75세 이상 → 65세 이상)	15
3. 보훈병원 진료비용 감면을 상향 (60% → 90%)	19
※ 참고자료	24

I. 개요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5. 1. 10.
- 3) 회부일 : 2025. 1.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 이 경우 진료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며,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 따른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으며,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인해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선순위 유족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

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및 제6항).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1인
- 2) 제안일 : 2025. 1. 10.
- 3) 회부일 : 2025. 1.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 이 경우 진료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며, 시행령에서는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으며,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인해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51조제5항 및 제6항).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5. 1. 10.
- 3) 회부일 : 2025. 1.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9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공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5. 1. 10.
- 3) 회부일 : 2025. 1.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 이 경우 진료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며, 시행령에서는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전몰군경의 유족 등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으며,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인해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42조제5항 및 제7항).

Ⅲ. 검토의견

□ 4건의 개정안¹⁾은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이유공자 및 유공자의 유가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감면율 범위를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연령 제한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17조(의료지원) ① ~ ④ (생략) 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	제17조(의료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u>대통령령으로</u> ----- --- <u>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90</u> 범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함. 다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병역 진료비 감면율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만 해당함.

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u>75세</u>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⑦·⑧ (생략)	<u>위에서 감액하며</u>----- ----- ----- ----- ----- ----- ⑥ -----<u>65세</u>----- ----- ----- ----- ----- ----- ----- ----- ----- ----- ----- ⑦·⑧ (현행과 같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51조(진료) ① ~ ④ (생략) ⑤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u>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u>	제51조(진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대통령령으로</u>-----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⑥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2. (생략) ⑦ (생략)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액하며----- ----- ----- ----- ⑥ 65세-----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	제7조(의료지원) ① -----

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감면(減免)</u>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③ (생략)	----- ----- ----- ----- -----<u>비용을 면제하거나</u> <u>해당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u> <u>에서 감액하며</u>----- -----. ②·③ (현행과 같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42조(진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u>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u>,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건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략) ⑥ (생략)	제42조(진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대통령령으로</u> <u>--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u> <u>해당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u> <u>위에서 감액하며</u>----- ----- -----. 1.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 2. (생략)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6조의3제1항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생략)

⑦ -----

-----.

-----.

1. ~ 2. (현행과 같음)

3.-----
----- 65
세 -----.

-----.

4. -----

----- 65세 -----
-----.

-----.

⑧ (현행과 같음)

1. 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현황

□ 현행 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체계는 ① 신체적 상이를 입은 상이유공자와 ② 그렇지 않은 비상이유공자 및 ‘유공자의 유가족’을 구분하여, 상이유공자²⁾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그 진료비용³⁾을 국가가 부담(면제, 국비진료)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⁴⁾ 비상이유공자⁵⁾ 및 유공자의 유가족은 보훈병원 진료 시 그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진료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감면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다만, 비상이유공자 중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유공자의 유가족 중 보상금을 지급받는 선순위 유족으로서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그 진료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의료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2)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신체검사에서 일정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를 포함)을 의미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및 전투중사군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 전체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지급하는 비용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 비용을 의미함.

4) 다만, 신체검사에서 일정 등급 미만 결정·판정을 받은 사람은 상이처(등록사유) 외 질병에 대하여는 진료비용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시행령), 그 밖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상이를 입었으나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에 대하여는 상이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특별공로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한편, 시행령 및 부령⁶⁾은 비상이유공자 및 유공자의 유가족의 진료비용 감면율은 60%를 원칙으로 하되, 참전유공자(90%) 및 재일학도의용군인(보훈병원의 경우 100%), 5·18민주화운동희생자(50%) 및 그 배우자 또는 유족(30%)에 대하여는 달리 정하고 있음.

[표 1]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체계 유형별 구분

구분			의료지원 시설	감면율
상이유공자 본인			보훈병원+위탁병원	보훈병원·위탁병원 100% *일정 등급 이하 상이처 외 진료 시 90%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공자의 유가족			보훈병원	보훈병원 60% *5·18민주화운동희생자(50%) 및 그 배우자 또는 유족(30%)
기 타	비상이 유공자 본인	참전유공자	보훈병원+위탁병원	보훈병원·위탁병원 90%
		재일학도의용군인		보훈병원 100%, 위탁병원 60%
		무공수훈자		보훈병원·위탁병원 60%
	유족 가족	75세 이상으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1명	보훈병원+위탁병원	보훈병원·위탁병원 60%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최초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 진료에 대하여만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1986년 제주지역에 위탁병원이 처음 지정된 이래, 1991년 상이유공자는 신체적 상이로 인하여 원거리에 위치한 보훈병원 이용이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상이유공자에 대하여만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용을 감면 하였고, 이후 재정여건 및 의료환경 등을 고려하여 비상이유공자와 유공자의 유족 일부에 대해서도 그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음.

6) 감면율과 관련하여,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은 시행령에서 그 범위만을 정하고(면제하거나 100분의 60의 범위, 참전유공자의 경우 100분의 90의 범위) 구체적인 수치는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감면율을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음.

- 2009년에는 고령으로 인한 거동 불편 등으로 보훈병원 이용이 어려운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수훈자 및 보상금 수급 선순위 유족에 대하여 위탁병원 진료 시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23년에는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연령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음.
- 한편,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대상자의 근거리 진료를 위한 위탁병원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표 2] 위탁병원 의료지원 대상자 확대 현황

일시	대상 범위
1986년	위탁병원 최초 지정
1991년	국가유공자 중 상이유공자 및 애국지사에 대한 위탁병원 국비진료 실시
2009년 7월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인 보상금 수급 선순위 국가유공자 유족
2012년 7월	75세 이상 보상금 수급 선순위 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2023년 10월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의료지원 연령제한 폐지 (전연령 확대)

자료: 국가보훈부

[표 3] 위탁병원 지정 현황

구분	1991	2000	2010	2020	2025(4월)
위탁병원 수	30개	80개	301개	418개	907개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대상자의 진료비용 감면율과 관련하여서는, 의료지원 대상자가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상이를 입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상이유공자와 그 외 유공자 등(비상이유공자 및 유공자 유가족) 간 차등을 두고 있는데, 상이유공자의 경우 진료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그 외 유공자 등에게는 60%를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만, 비상이유공자 중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에는 보훈병원 진료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감면율을 90%로 하고 있는 등 일부 비상이유공자 및 유공자 유족에 대하여는 감면율을 달리 정하고 있음.⁷⁾

[표 4] 보훈대상자 진료비 감면율

구분		감면율	
		보훈병원	위탁병원
상이유공자		면제	면제
비상이유공자		60%	-
	참전유공자	90%	90%
	재일학도의용군인	100%	60%
	무공수훈자	60%	60%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0%	-
유공자 유가족		60%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30%	-

7)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희생자(50%) 및 그 유족(30%)은 다른 비상이유공자 및 그 유족의 감면율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음.

- 개정안은 ① 유공자의 유족 중 위탁병원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의 연령 제한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② 현재 보훈병원 진료비용의 60%를 감면받고 있는 비상이 유공자 및 유공자 유가족의 감면율을 90%로 상향하려는 것임.

[표 5]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 개정안, ①음영: 연령제한 하향, ②음영: 감면율 상향)

구분	대 상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비용
비상이 유공자	참전 유공자법	참전유공자	○	○	90% 국가부담
	국가 유공자법	재일 학도의용군인	○	○	보훈병원 100%, 위탁병원 60%
		무공수훈자	○	○	60% 국가부담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	×	→ 개정안: 보훈병원 90%
	특수임무 유공자법	특수임무공로자	○	×	60% 국가부담
	5·18민주 유공자법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	50% 국가부담
유 가 족	독립 유공자법	배우자·자녀·손자녀	○	×	60% 국가부담 → 개정안: 보훈병원 90%
		75세 이상 보상금 수급 선순위 1명 → 개정안: 65세 이상	○	○	
	국가 유공자법	배우자 또는 선순위 1명	○	×	
		75세 이상 보상금 수급 선순위 1명 → 개정안: 65세 이상	○	○	
	보훈보상 대상자법	배우자	○	×	
		75세 이상 보상금 수급 배우자 → 개정안: 65세 이상	○	○	
	특수임무 유공자법	배우자 또는 선순위 1명	○	×	60% 국가부담
	5·18민주 유공자법	배우자 또는 선순위 1명	○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의 경우 30% 국가부담

2. 위탁병원 감면대상 연령 하향(75세 이상 → 65세 이상)

□ 현행법은 유공자의 유족 중 위탁병원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⁸⁾ 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용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① 연령 제한 요건과 ② 보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중, 연령 제한을 “7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것이어서, 이를 하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유공자 유족에 대한 위탁병원 감면대상 요건 중 연령 제한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려는 것임.

[표 6] 개정안에 따른 유공자 유가족 위탁병원 지원 대상 범위

(2025년 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65세 미만	65세~74세	75세 이상 (현행)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458	1,207	4,106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2,416	17,728	72,499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	185	49	110

* 개정안의 시행예정 연도인 2026년의 예상인원(2024년 연령 기준 인원예 최근 3년 평균 증감율 적용)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에 따른 경우, 고령인 유족이 주거지 등으로부터 보다 근접한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유족에

8) 유족 중 보상금(6·25전몰군경자녀수당 포함)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사망 또는 상이로 인하여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의 유족과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유족임(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과 같이 공무원 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공자는 제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등분할 지급받는 사람은 그 중 1인에 한함.

대한 의료지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개선되어 그들의 의료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고, 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하여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위탁병원 감면대상 범위 확대는 재정여건, 진료 지원 비대상자와의 형평성 및 보훈의료정책환경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에 따른 대상 확대 인원은 18,984명(2026년 기준)으로, 이로 인하여 국가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위탁병원 진료비용이 연간 약 52억원(향후 5년간 약 25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행 위탁병원 지원 체계에서도 위탁병원 진료비는 편성된 예산을 상회하여 타 사업 예산으로부터 대규모 이·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추가 재원 확보가 사전에 준비될 필요가 있음.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2026년~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독립유공자 유족	285	301	319	338	358	1,601
국가유공자 유족	4,180	4,485	4,813	5,164	5,542	24,184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12	14	16	19	23	84
계	4,477	4,800	5,148	5,521	5,923	25,869

자료: 국가보훈부

[표 8] 최근 3개년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예산액	집행액	이·전용등
2022	위탁병원 진료비	250,404	247,332	-
2023	위탁병원 진료비	265,043	272,987	7,946
2024	위탁병원 진료비	253,932	290,747	36,819

자료: 국가보훈부

- 둘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만을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위탁병원 진료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 본인 및 유공자 유족과의 의료지원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9] 비상이유공자 및 유족 중 위탁병원 감면진료 비대상 현황

구분		위탁병원 감면진료 비대상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유공자 본인	상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그 외 모든 상이유공자
	비상이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수훈자
유족	보상금○	74세 이하 → 64세 이하	75세 이상 → 65세 이상
	보상금×	보상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 모든 유공자 유족	-

- 셋째, 위탁병원 의료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위탁병원 지정 확대, 감면을 인상 및 감면 범위 확대, 진료 수준 향상 등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의 추가적 재정부담능력, 한정된 재원의 배분 및 정책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반면, 개정안을 수용하려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의 연령 분포를 고려하여 볼 때, 연령 기준을 폐지하더라도 개정안과 비교하여

추가되는 인원은 3,059명, 추가 예산은 연간 약 8억원이라는 점에서, 연령 기준 자체를 폐지하는 대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⁹⁾

[표 10] 연령 제한 폐지 시 추가 재정 소요(2026년~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독립유공자 유족	393	416	440	466	494	2,209
국가유공자 유족	4,750	5,097	5,469	5,868	6,297	27,481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55	66	78	92	110	401
계	5,198	5,579	5,987	6,426	6,901	30,091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선순위 유족’이라는 동일한 유형 내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위탁병원 이용 가능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연령 기준의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연령 기준을 하향하는 것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임.
- 기획재정부는 국가유공자 중 일부 유공자는 본인도 위탁병원 의료지원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유족의 위탁병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임.
- 참고로,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안)이 각각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2024. 6. 27.)되어 있음.

9)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으로 최초 편입(2009년)되었을 당시에는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2023년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연령으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음.

3. 보훈병원 진료비용 감면율 범위 상향 (60% → 90%)

□ 현행법¹⁰⁾은 비상이공자 및 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훈병원 진료비용 감면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을 면제하거나 100분의 60의 범위(단,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의 경우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하여 감면율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¹¹⁾

○ 이에 대하여, 감면율의 범위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감액률의 상한인 100분의 60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에 비하여 낮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4건의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는 감면율 범위를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 다만,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현재도 보훈병원 진료비의 90%를 감면받고 있으므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10) 개정안이 발의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말함.

11) * (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진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진료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의 장은 법 제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감면율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 외에 다른 변화는 없음.

- 또한, 비상이유공자 중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에는 현재도 보훈 병원 진료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따른 감면율 상향의 대상이 되지 않음.

[표 11] 개정안에 따른 보훈대상자 보훈병원 진료비용 감면율

구분		보훈병원 감면율				
		현행		개정안		비고
상이유공자 본인		100%	(법률)	-		-
비 상 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60%	(시행령)	90%	(법률)	감면율 상향
	참전유공자	90%	(시행령)	90%	(법률)	-
	재일학도의용군인	100%	(시행령)	100%	(시행령)	-
유공자 유가족		60%	(시행령)	90%	(법률)	감면율 상향

- 개정안은 비상이유공자 및 유공자 유가족의 의료비용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예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중 감면율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감면율 범위와 같이 가변적인 사항은 재정 여건 상황과 보훈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¹²⁾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의 추가적 재정부담능력 및 전체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체계 내 비례성 등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비상이유공자 및 유공자 유가족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비율을 90%로 상향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는 연간 2,165억원 상당(5년간 약 1조 82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재정 여건 및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2]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2026년~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독립유공자법 (유족)	13,534	14,042	14,566	15,105	15,660	72,907
국가유공자법 (비상이유공자 및 유족)	186,880	193,892	201,111	208,546	216,201	1,006,630
보훈보상대상자법 (배우자)	552	573	596	618	641	2,980
계	200,966	208,507	216,273	224,269	232,502	1,082,517

*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경우, 현행 기준하에서도 90%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추가 재정 소요 없음
자료: 국가보훈부

12) [비상이유공자 및 유공자 유족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 변화]

구분	1974	1985.1.	1990.1	1992. 7.	1998.7.	2002.7.	2005.7.	2018.1.~
국가유공자 유가족	유족 50% 가족 40% (시작)	좌동	6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무공·보국수훈자	—	50% (시작)	6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참전유공자	—	—	—	30% (시작)	50%	좌동	60%	90%
5·18유공자 및 유가족	—	—	—	—	—	30%~60% (시작)	좌동	좌동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	—	—	—	—	—	60% (시작)	좌동

- 둘째,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유공자 및 유족은 개정 여부와 무관히 현행 감면율(30%~60%)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인데,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들과 개정안에 따라 90%의 감면율을 적용받게 되는 유공자들 간의 지원 격차가 발생 또는 확대될 것이므로, 두 그룹 간에 이러한 감면율의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사정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3]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감면율

구분			보훈병원 감면율
특수임무 유공자법	본인	특수임무공로자	60%
	유가족	배우자 또는 선순위 1명	
5·18민주 유공자법	본인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0%
	유가족	배우자 또는 선순위 1명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60% (30%)

- 그 밖에,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감면율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현행 60%인 그 외 유공자 등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을 90%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 및 개정안의 문언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법 개정 필요성 여부 또는 그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대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도 논의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은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진료비용 감면율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 개정 없이도 시행령에서 감면율을 상향하는

것에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정안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을 면제하거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감액” 하도록 하여 감면율의 상한만을 정하고 있어, 결국 그 문언상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감면율의 위임 범위는 현행법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

- 따라서, 법률의 개정 외에도, 시행령에서 직접 감면율을 상향 규정하는 방안과 입법취지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진료비용을 면제하거나 100분의 90 이상의 범위에서”와 같이 하한을 정하여 위임하는 방식의 대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재정 여건 및 의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감면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는 감면율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감면율 상향에 따른 재정부담 및 다양한 의료지원 확대 요구사항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므로 개정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막대한 재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12

참고 1

위탁병원-보훈병원 감면진료 대상자 현황

구 분	위탁병원	보훈병원
보훈보상 대상자법	75세이상 보상금 받는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75세이상 보상금 받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 배우자 - -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배우자 재해사망공무원 배우자 재해부상공무원 배우자
	104명	3,723명
특수임무 유공자법	-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가족 중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1인 ※ '16.6.23. 이전 등록자는 유가족 모두
	-	7,221명
5·18민주 유공자법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유공자 가족 중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1인 ※ '16.6.23. 이전 등록자는 유가족 모두
	-	13,564명
국가 유공자법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수훈자 75세이상 보상금 받는 선순위 1인 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유공자 가족 중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인 ※ '12.7.12. 이전등록자는 유가족 모두
	61,312명	1,205,317명
독립 유공자법	75세이상 보상금 받는 선순위 1인	독립유공자 배우자 독립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3,804명	87,368명
참전 유공자법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78,514명	78,510명
제대 군인법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	53,086명
합 계	143,734명	1,448,789명

자료: 국가보훈부 (2025. 3. 31. 기준)

참고 2 위탁병원 관련 현황

[권역별 위탁병원 지정 현황]

(2025. 4. 1. 기준)

구 분	계	중앙병원	인천병원	부산병원	광주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
(진료권역)	-	(서울,경기 강원)	(인천)	(부산,경남, 울산,제주)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대전,충남 충북,세종)
합 계	907	334	32	174	157	107	103
종합병원	87	31	5	14	16	9	12
병 원	181	58	3	40	35	22	23
의 원	639	245	24	120	106	76	68

자료: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연혁]

연도	지원 대상	내 용
1986	국가유공자, 유가족	제주지역 2곳 위탁병원 최초 지정 운영 (보훈병원 자체예산)
1991	(상이) 국가유공자 + 애국지사	위탁병원 전국 30개소 확대 지정 운영
2002	(상이)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유공자법 제정
2005	(상이)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유공자법 제정
2009 (7월)	(비상이)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무 공수훈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75세 이상 보상금 수급 선순위 국가유공자 유족 1인	국가유공자법 및 참전유공자법 개정
2012 (7월)	(유족) 75세 이상 보상금 수급 선순위 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독립유공자법 개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법 제정
2023	(비상이)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연령제한 폐지	국가유공자법 및 참전유공자법 개정

자료: 국가보훈부